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4
------	-----

2022. 9.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2.9.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21.7.13.)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보조사업 분야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모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함(안 제16조).
- 마.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 바.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는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변동현황의 경우 매년 6월 및 12월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20조).
- 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법령위반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 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 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25조).
- 차.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
- 카.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9조).
- 타.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명단 공표 여부,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31조).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전부개정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2021.7.13.)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등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나. 전부개정안의 입법 배경

- 최근 지방재정의 확충과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면서 지방보조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부정수급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해 복잡다양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방보조금의 특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

법)이 제정·시행됨(2021.7.13.).

- 기존의 지방보조금 관련 입법체계는 「지방재정법」 제2장의2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르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음.
-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금 관리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강화, 보조금 교부 제한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출됨.
- 한편, 동일한 내용의 전부개정안이 제10대 의회에 제출(2021.10.15.)된 바 있으나 임기종료(2022.6.30.)로 폐기되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2022.4.28.)되면서 법률 정비사항이 일부 반영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자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다. 주요사항 검토

(1) 입법체계

-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과 조문체계를 일치시키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2021.7.29.)과 유사한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4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거쳐 모두 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표준조례안에 없는 차등보조율의 적용(안 제4조),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안 제7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안 제17조), 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안 제25조) 등은 독자적인 규정임.

< 서울시 전부개정안과 현행 조례의 조문 구성 >

전부개정안		현행 조례		비고
조 항	조 제 목	조 항	조 제 목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	보조대상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7조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신설(법 제4조)
제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8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6조	자치구의 부담의무	제9조	자치구의 부담의무	
제7조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제6조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9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9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신설
제1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20조	보조신청	
		제21조	교부결정	
제11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22조	교부조건	

제12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23조	교부결정 통지	
제13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제24조	교부방법	
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5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6조	지방보조금의 집행	
		제27조	용도와 사용금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1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16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29조	실적보고	
		제30조	정산검사	
		제31조	감독 등	
제17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 감사			신설(법 제18조)
제18조	성과평가	제32조	성과평가	
제19조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신설
제2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4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신설(법 제22조)
제22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5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3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신설
제24조	명단 등의 공표			신설(법 제30조)
제25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신설(법 제35조)
제26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6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이의신청 등	제37조	이의신청 등	
제28조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30조	위원의 임기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3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회의 등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	위원의 해촉	
제33조	의견 청취 등	제16조	의견청취 등	
		제17조	살비보상	
제34조	수당			
제35조	운영세칙	제18조	운영세칙	
제36조	시행규칙	제38조	시행규칙	
부칙		부칙		

- 조례의 주요내용은 ▶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안 제16조), ▶ 회계 감사(안 제17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안 제25조) 등이 있음.
- 이하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독자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안 제3조)

- 안 제3조는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등 8개 분야로 정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음.
- 표준조례안은 조례로 분야별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분야 및 기준보조율의 범위(안 제3조)>

분야	하한선(%)	상한선(%)
사회복지	30	70
공원·환경	30	70
도로·교통	30	50
도시계획·주택정비	30	50
산업경제	30	70
도시안전	30	50
문화관광	30	70
일반행정	30	50

-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는 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시행규칙 [별표1] 에서는 94개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함.

<서울시 94개 사업 분야별 시비 기준보조율(시행규칙)>

분야	소계	30~50%	60%	70%	80%	90%	100%	정액보조	차등보조
계	94	31	1	4	2	3	10	23	20
사회복지	46	18	1	1	2	3	6	10	5
공원환경	12	3	-	1	-	-	1	4	3
도로교통	7	2	-	-	-	-	-	1	4
도시계획 주택정비	4	3	-	-	-	-	-	-	1
산업경제	3	-	-	2	-	-	-	-	1
도시안전	2	2	-	-	-	-	-	-	-
문화관광	20	3	-	-	-	-	3	8	6

- 하지만,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복지 분야의 15개 사업의 경우는 개정안의 상·하한선 기준보조율로 인해 현행 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기준보조율 범위를 벗어나는 15개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시행규칙 시비보조율	개정(안) 기준보조율
사회복지 (1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30~70%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거리노숙인 보호	100%	

공원환경 (1)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30~70%
문화관광 (3)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30~70%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 매년 5%씩 하향조정, ** 매년 20%씩 하향조정

- 지난해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현행 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의 상·하한선 조정을 요청함(2021.9.29.~10.4).
-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6.30.~7.20)에서도 7개 자치구(양천, 동대문, 금천, 광진, 송파, 성동, 동작)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시행규칙상 사업별 보조율 분포 기준을 근거로 보조율을 산정하였으며,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안 제3조제2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시비보조율의 범위를 벗어나 예외조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의미가 무색해짐.
-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4조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광역·기초 간 시비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별 시비보조율을 위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하지 않은 채 규칙으로 포괄 재위임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준보조율 위임사항 비교>

지방보조금법	표준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3)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안 제4조, 안 제7조)

- 안 제4조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서울시 차등보조율 기준 규정(시행규칙)>

-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한다.

재정력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안 제7조는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신설 뿐만 아니라 기준보조율의 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작년 제출된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2021.9.29~10.4)를 통해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함.
-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과 부담경비의 협의 규정은 기준보조율 지급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써, 지방보조금법과 표준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의 자치구 부담경비의 대한 시와 자치구간의 중요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4) 지방보조금의 공모 및 교부(안 제9조~안 제13조)

- 안 제9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를 신설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 조건, 교부 결정 및 통지, 교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특히, 안 제11조제2항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을 강화함.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안 제16조~안 제17조)

- 안 제16조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과 함께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일 경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함.
- 안 제17조는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이상의 규정은 외부 독립된 감사 통제시스템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도입됨.

(6) 성과평가(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시범효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감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 현재 사업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유지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구분	평가주체	평가지기	평가방법 및 내용
자체평가	사업부서	매년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점수부여) - 상대평가: 실·본부·국 단위로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로 등급배분 - 미흡등급에 대해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표시
심층심의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매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대상: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 심의 -심의내용: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심층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7)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안 제19조~안 제28조)

- 안 제19조는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함.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보조금 반납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받음.
-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보고, ▶홈페이지 공시,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 ▶변동현황이나 중요한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안 제23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4조는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안 제25조는 지방보조금 반환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액의 5%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6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와 지급제한을 하도록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에 있어 제재규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상의 규정들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됨.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설 관리규정>

목 적	내 용
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 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신설(안 제16조)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신설(안 제17조)
부정수급 방지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자 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안 제23조) - 부정수급자 명단, 위반행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 신설(안 제24조) - 반환 명령 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신설(안 제25조) - 부정수급자 보조금 교부제한 및 수행배제(안 제26조) <p style="text-align: center;">※ 종전 : 5년 범위 교부제한</p>

- 한편, 안 제28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신설하여 의회의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함.
-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 체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8)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29조~안 제35조)

- 안 제29조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 관리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있음.
- 심의대상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추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조례에 현행화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용(안 제31조)>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의 비효율성과 관리 미흡이 지적되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심의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심의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지방보조금 관리는 그동안 「지방재정법」을 통해 규율해 왔으나, 독립된 개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현재 총 721건에 3조 7,856억에 달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전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보조율의 범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규정을 담고 있음.
-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체계적인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누수와 지방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안 제3조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재위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미달하는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 설정으로 일부 자치구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됨.

- 한편, 제10대 의회 임기종료(2022.6.30.)가 되지 않아 서울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이 폐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계획(2022.6.21.)과 입법예고(2022.6.30.~7.20.)를 시행하였으므로 입법 절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4
----------	--------

제안년월일 : 2022년 09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기준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복지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의 상한선을 상향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관광 분야 사업의 기준보조율 범위의 상한선을 100퍼센트까지 상향 수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중 “70퍼센트” 를 각각 “100퍼센트”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p> <p><u>1.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u></p> <p><u>2. 공원·환경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u></p> <p>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p>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p>5.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p> <p>6. 도시안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p><u>7. 문화관광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u></p> <p>8.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p>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p> <p><u>1.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u></p> <p><u>2. 공원·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u></p> <p>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p>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p>5.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p> <p>6. 도시안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p><u>7. 문화관광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u></p> <p>8.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p>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2. 공원·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6. 도시안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관광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8.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자치구의 부담의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 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

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

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

제12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 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 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 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

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제2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

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지방보조금의 관리)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서

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심의한다.